

# 채용 의뢰서

<b>업 체 기 본 정 보</b>	회 사 명	(주)에코시스텍			업 종	계장계측, 환경, 수질	
	주 소	본사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0(금강펜 테리움아이티타워) 1417호 지사 : 경북 김제시 봉황공단2길 29-34(오정동)			설 립 일	2014. 10. 21.	
	홈 페이지	www.ecosystec.co.kr/default/			상시근로자 수	90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402-86-11949	매 출 액	2 0 0 0 0 백만원	법인/상장 여 부	법인	
	회 사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기술에 기반을 둔 물환경관리 사업</li> <li>■ 수질분석기/계측기기 분야, 수질측정기기관리대행업, 유지관리 업무 수행</li> </ul>					
	인사담당자	부 서	TMS팀	성 명	황 태 현	직 위	이 사
	전화번호	010-3078-2441		F A X			
	이 메 일	thh@ecosystec.co.kr		or	th.hwang129@gmail.com		
<b>모 집 상 세</b>	모 집 인 원	3 명		성 별	남		
	채 용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턴 ( 3개월 ) <input type="checkbox"/> 수습 ( 개월 )					
	근 무 부 서	TMS부서					
	직 무 내 용	TMS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현장 엔지니어					
	자 격 조 건 (우대사항)	1. 지역파견근무가능, 2. 운전면허 필수, 3. 환경분야기사 자격증(소음진동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생물),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생물공학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케도장비정비기사, 승강기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농업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공사기사, 광학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의공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기사, 화학분석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中 1 필수					
<b>근 무 조 건</b>	근 무 시 간	주5일, 법정 근로시간 준수					
	급 여 조 건	월 급 제	만원/월	상 여	% (급여에 포함)		
		연 봉 제	연봉 : 3,500만원 이상, 면접 후 결정				
기 타 복 리 후 생	건강검진, 인센티브제, 상여금,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성과급, 4대보험, 자격증취득지원, 자기개발비지원, 구내식당, 점심식사제공, , 파견근무 기숙사 제공						
<b>제 출 방 법</b>	지 원 방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접수 <input type="checkbox"/> 우편접수 <input type="checkbox"/> 방문접수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접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 출 서 류	입사서류 ( <input type="checkbox"/> 당사양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마 감 일	상시모집					
<b>기 타</b>	1. 지자체별 사업소						

사항	<p>전형방법</p> <p>가. 1차 전형 : 이메일 이력서 접수 후 1차 면접</p> <p>나. 2차 전형 : 2차면접, 임원면접, 최종합격</p>
----	---

2019년 11월 19일에 환경부 보도자료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동일업체 측정기기 대행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가설비인데 이 설비를 운영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합니다.

근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기기가 측정된 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를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TMS)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A업체에서 위탁관리도 하고, A업체에서 TMS관리대행업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사업장에 우리 관리대행을 할수 있었지만  
이젠 같은회사가 TMS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지요.

전국에 TMS설치한 사업소가 1000여개 인데 이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못하고 TMS전문관리 회사에 위탁을 줘야 하는 법적인 상황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운영사와 TMS위탁관리 업체가 운영사의 편이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열악하고 힘들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검색해 보면 또는 선배에게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하실겁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고 실제 현장여건에 대한 조건이 현실화 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